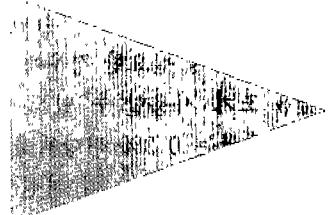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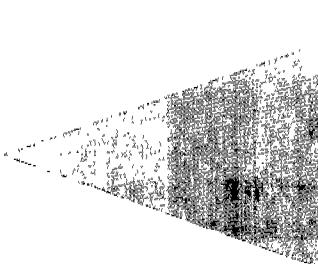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



姜 正 變

韓國電力公社 發電處長

1. 支援事業 推進背景 및 目的

國民生活水準 향상과 國家 經濟發展을 위하여 電力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인정한다.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역개발효과나 혜택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대신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環境問題·原子力安全性 등의 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발전소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최근 국민권리의식 향상과 사회의 民主化 추세에 영향을 받아 이제 더 이상 他地域에 사용되는 電力生產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권리주장을 집단행동 등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불만과 피해의식은 電力需要成長에 따른 신규발전소의 適期建設은 물론 기존발전소의 안정적인 가동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發電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紐帶를 強化하고,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支援事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발전소가 共存共榮할 수 있는 制度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 1988년부터 動力資源部와 韓國電力公社는 관계법령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89년 6월 16일 法律第4137號로 發電所周邊地域 支援에 관한 법률이 制定·公布되었으며, 이어 同法施行令('90. 3. 8, 大統領令 第12950號) 및 同法施行規則('90. 4. 23, 動力資源部令 第110號)을 제정 완료하여 '90년도부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支援事業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2. 支援法律의 主要內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法律 및 同法施行令에 규정된 주요내용을 項目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支援事業基金

支援事業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지원사업 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은 支援事業을 시행하는 發電事業者(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연하되 출연금의 규모는 사업시행 前前年度의 전기판매 수입금의 0.3%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원금을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0.3% 해당액을 초과하여 出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원금의 규모는 앞으로 매년 120억 내지 200억원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支援事業審議委員會

支援事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大容量발전소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1) 審議委員會

審議委員會는 한국전력공사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되며 위원은 局長級政府公務員(6人)과 발전사업자 소속직원(韓電 및 水資源公社 각 1人)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전문가(2人)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임무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指針의樹立, 지원사업계획 審議 및 基金의 運用·管理 등 支援事業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審議하며,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公正하고 效率의인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調整 및 統制役割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地域委員會

地域委員會는 발전소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각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副團體長(부군수, 부시장,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發電所周辺地域의 邑·面·洞을 대표하는 地

方議會議員 각 1인(4人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각 1인, 발전소직원 1인 및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위원회의 임무는 지역별 지원사업계획의 등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다. 支援事業內容

支援事業은 所得增大事業, 公共施設事業, 育英事業 및 弘報事業으로 구분되어 그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증대사업은 발전소 건설 및 가동과直接 관련이 있는 移住者 및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영농기계 공급, 양식어장 운영, 특용작물 재배, 토신품판매장 운영 등의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제반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公共施設事業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및 도서관 건축, 소규모 마을도로시설, 소규모 어항시설, 방파제 축조,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의 사업이며

셋째, 育英事業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移住者 및 지역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지역소재 학교에의 교육기자재 지원 및 도서기증 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넷째, 弘報事業은 원자력의 안전성 및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개발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紐帶強化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 支援對象地域

支援事業은 公企業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가동중이거나 건설중(건설예정 발전소 포함)인 발전소로부터 半徑 5km 이내 지역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半徑 5km 이내 지역과 행정구역이 같은 邑·面·洞의 지역이거나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支援事業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발전소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는 半徑 5km 이외 지역에 대하여도 支援事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水系와 인접한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 支援事業 施行期間

支援事業의 시행은 발전소의 建設期間 및 全稼動期間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承認告示日부터支援事業을 초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전소 건설초기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移住者에게 지원사업을 미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支援金規模

원자력·화력발전소 및 건설중인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발전소의 시설규모, 설비이용률, 소재지 및 발전원(원자력, 화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算定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소 시설규모가 크고 발전소 가동률이 높은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및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에는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가동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年間 최고 10억원, 건설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年間 최고 15억원까지 支援金이 지원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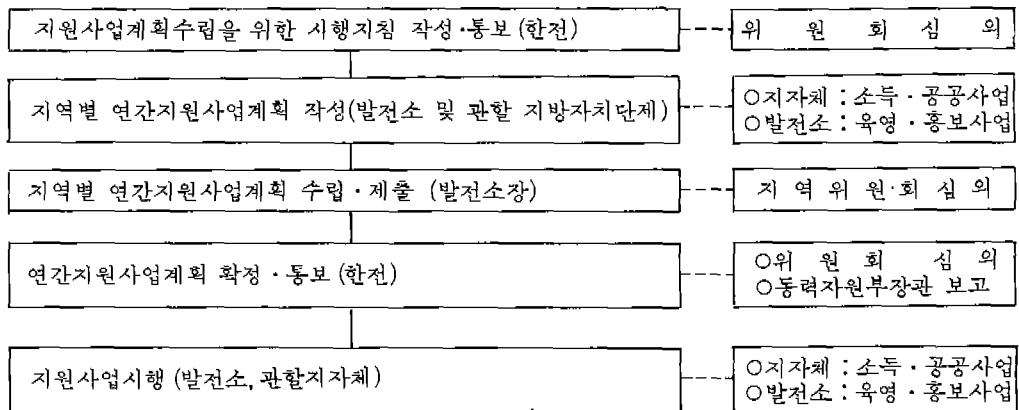
사. 支援事業의 施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과 公共施設事業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認·許可 문제, 시설물의 취득·관리문제와 시설물에 대한 각종 租稅問題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育英事業과 홍보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발전소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아. 事業의 優先施行 및 地域住民 優先雇傭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移住者는 신규 발전소 건설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 바, 이들에게는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 등을 他 지역주민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生計安定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발전소의 雇傭可能한 職種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많은 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地域住民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지원사업 시행절차



3. 支援事業 推進現況

〈표 4〉

시설구분	지원 내용	실적
농림수산업	영농기계공급, 비축우사육, 공동작업장설치, 전복양식지원, 농로개설 등	120개소
상공·관광	마을상설시장개설, 해수욕장개발	5개소
계		125개소

가. 支援法 制定以前의 支援事業施行

發電所周辺地域 支援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본격적인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88, '89년도에는 韓電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숙원인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및 기타 지역행사지원 등에 대하여 '88년도에는 약 21억원, '89년도에는 약 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실적을 보면 표 2와 같다.

나. 支援法 制定以後의 支援事業施行

(1) '90年度 支援事業實績 및 效果

(가) 支援事業實績

'90년도는 支援法에 의한 支援事業施行初年으로서 54개 발전소 주변지역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등 총 384개 사업에 1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실적을 보면 표 3과 같다.

(나) 支援事業效果

① 所得增大事業分野

〈표 2〉 사업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기타 행사지원	계
'88년	1,679,420	172,858	235,846	2,088,124
'89년	3,524,904	685,332	776,396	4,986,632
합계	5,204,324	858,190	1,012,242	7,074,756

〈표 3〉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사업량	지원금액
소득증대사업	45개사업	2,000,355
공공시설사업	204개사업	7,277,103
육영사업	135개사업	1,468,511
홍보사업 등	-	547,126
합계	384개사업	11,293,095

○ 支援實績 (표 4 참조)

○ 支援效果

- 영농기계공급 및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으로 주민 소득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입 증대

② 公共施設事業分野

○ 支援實績 (표 5 참조)

○ 支援效果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주민교통 불편해소

- 주민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문화발전에 기여

③ 育英事業分野

○ 支援實績

- 장학금지급 : 2,268명 (중학생 1,154, 고

〈표 5〉

구 분	지 원 내 용	실 적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가로등, 복지회관, 노인회관, 놀이터 등	125개소
도로시설	마을안길, 진입도로, 해안도로 등 소규모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등	137개소 (65, 116m)
상하수도시설	간이 상수도, 하수도, 하천복개 등	53개소
교육·문화시설	마을도서실, 종합문화회관 등	15개소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공동화장실 등	45개소
기타	호안용벽, 방파제, 물양장, 자가발전기 지원 등	145개소

교생 1,081, 대학생 23)

- 장학기금설치 : 5개 발전소 주변지역
 - 교육기자재지원 : 265개교
 - 컴퓨터, 피아노, 방송시설, 급식시설, 과학기자재 등
 - 기 타 : 143개 학교에 운동부지원 및 백 일장 개최 등
- 支援效果
- 우수학생 및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습효과 제고
 - 학생들을 통한 전력사업 홍보

④ 地域住民 優先雇傭

○ 主要 推進內容

'90년도 고졸수준 신입사원 채용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자녀에게 필기고사 성적의 10% 가점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청경, 기능직, 별정직 등 발전소에 채용 가능한 직종에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표 6 참조).

(2) '91年度 支援事業計劃

'91년도에는 59개 발전소 주변지역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등 총 539개 사업에 12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별 지

〈표 6〉 '90年度 地域住民 採用實績

구 분	직원	기능직	별정직	청 경	계
인원(명)	48	24	120	6	198

〈표 7〉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사업량	지원금액	비 고
소득증대사업	99개사업	3,334,224	전년대비
공공시설사업	295개사업	6,342,913	7.5%
육 영 사 업	145개사업	1,743,862	증가
홍보사업 등	-	723,817	
합 계	539개사업	12,144,816	

원 내역을 보면 표 7과 같다.

4. 向後展望 및 課題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지원법에 의거 매년 약 120~200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지역주민 축원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각종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및 전 가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행되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기반 조성으로 신규발전소 건설입지의 적기확보와 발전소 운영의 원활화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支援事業이 시행되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 까지의 효과를 보면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民願事項의 解消, 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지역주민과의 紐帶強化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오랜 宿願事業인 公共施設事業 및 所得增大事業의 시행과 地域住民子女에 대한 奨學事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리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發展圖謀와 電力事業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法制定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 관련 地方自治團體, 지역주민 및 발전소가 相互協調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事業의 選定, 效率的인 事業施行 및 事業의 事後管理 등에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地域住民이 支援事業의 근본취지를 이해하고 무리한 자기욕구를 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